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4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
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(특화재생) 공모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4. 6. .

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

의 안 번 호	제 호

제출연월일: 2024. 6. .
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제안사유

❍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0조 규정에 의거,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(특화재생분야) 공모신청을 위하여 활성화계획 수립(안)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사 업 명: 공룡을 만나는 첫마을, 배둔
❍ 사업위치: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26-2번지 일원 (110,000㎡)
❍ 사 업 비: 250억 원(국비 150, 도비 20, 군비 80)
❍ 사업기간: 공모선정 이후 4년간 (2025년 ~ 2028년)
❍ 사업내용: 특화자원 공룡과 공룡엑스포 관문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로컬브랜딩 및 관광활성화,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활성화 도모

3. 추진경과

❍ ’23. 7.: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 고성군의회 의결
❍ ’24. 1.: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추진 계획 수립
❍ ’24. 3.: 거점시설 부지확보(토지소유주와 계약협의 및 계약금 지급)
❍ ’24. 5.: 주민설명회 및 2024년 1차 주민협의체 회의
❍ ’24. 6.: 주민공청회 공고 / 도시재생 지원기구(주택도시보증공사) 컨설팅
❍ ’24. 7.: 주민공청회(7. 4.) / 의회 의견청취

4. 근거법률: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0조제3항

붙임 고성군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(특화재생분야) 활성화계획(안) 1부. 끝.

참고 **관계법령(발췌)**

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20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**전략계획수립권자**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,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**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,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,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 (이하 생략)